작성방법 1. 자산구분란 가. 종류별, 업종별,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 나. 취득일(③)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. 2.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. 일반상각액(⑭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 일반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 나. 특별상각액(⑮)란은 일반상각액(⑭)에 특별상각률(⑬)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. 당기상각시인범위액(㉒)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잔존가액(㉑)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(⑯)을 적습니다. 다만,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에서 당기산출상각액(⑯)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(㉑)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(⑫)를 적습니다. 3. 회사계산상각액(㉓)란은 회사계산상각비(⑧)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(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 4. 차감액(㉔)란은 회사계산상각액(㉓)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(㉒)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,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∆표시를 적습니다. 5.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㉕)란은 “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”의 ○117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. 6.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(㉖)란에는 차감액(㉔)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(㉕)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. 단, 차감액(㉔)란에 시인부족액(∆표시분)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(⑪)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. 7. 당기말 부인누계(㉘)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(⑪)에 당기상각부인액(㉖)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가감하여 적고, “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[별지 제50호(갑)서식]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. 8. 당기의제상각액(㉙)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(㉔)란의 시인부족액(∆표시분)을 적습니다. 단,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(㉗)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 ※ ㉛~㊳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. 9. 기준상각률(㉛)란에는 “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[별지 제20호서식(3)]”의 기준상각률을 적고,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. 10. 종전상각비(㉜) 가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：⑳×㉛ 나.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：⑫×㉛ 다.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：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.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㉝)란은 종전상각비(㉜)에서 ｢법인세법｣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{㉓-(㉘-⑪)}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 12. ㉞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㉝)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. 13. ㉟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“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[별지20호서식(3)]”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(㉝)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. 14. ㊴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.